여주시 공고 제2024-10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대상 : 황상* 등 272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14.
3.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가.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여주시 차량등록사무소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기한 내에 은행 및 우체국 등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주시 차량등록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여주시 차량등록사무소 (☎ 031-887-2295, Fax 031-887-2474)

2024년 4월 30일

여 주 시 장